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| | |
|--------|-------|
| 선 람 | 기관위원장 |
| | |

제1000호 2013. 12. 23.(월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14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
규칙 일부 개정 규칙(안) 입법 예고 ----- 1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1421호 폐기 공인 공고 ----- 6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1407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12월 18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(안) 입법 예고

1. 개정이유

- 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(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)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일·숙직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안 제5조2에서는 당직수당을 50,000원으로 통일
- 안 제6조2에서는 재택당직수당을 30,000원으로 명시

3. 의견제출

이 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총무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【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/☎ 032-560-4090/Fax032-560-2710】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소속공무원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”으로, “기타사고”를 “그 밖에 사고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본청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전단 중 “40,000원”을 “5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화재 및 침입자등 긴급사태 발생시”를 “화재, 침입자 및 비상근무 등 발생 시”로, “조치후”를 “조치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우에만”을 “경우에 30,000원을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

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에 의하여”를 “각 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1대이상”을 “1대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체없이 다음 각 호”를 각각 “지체 없이 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기관”을 “해당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3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”로, “2가지이상”을 “2가지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당해구역”을 “해당구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

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9조제2호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조이상”을 “1조 이상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4조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규정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4. 1. 1. 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1421호



폐기 공인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12. 20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: 2013년 12월 20일
2. 폐기공인 인영

| 구분 | 공인명 | 규격 | 인영 | 등록 및 폐기사유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폐기 공인 | 검암경서동장인 /민원전용 | 2.1cm x 2.1cm |  | 인증기 노후화로 불용처분함에 따른 폐기 | |
| 폐기 공인 |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/검암경서동민원전용 | 2.4cm x 2.4cm |  | 인증기 노후화로 불용처분함에 따른 폐기 | |